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어린이집용) 주요 변경내용

운영체계 주요 변경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 일반사항	
	〈변경〉 2)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3) 사업개요 ◍ 평가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중 략) ------- ◍ 평가과정 : 3단계(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2)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3) 사업개요 ◍ 평가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중 략) ------- ◍ 평가과정 :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2. 운영체계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 평가대상 선정	**〈변경〉** 가.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의6호)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하고,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다만,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의 사유 발생 시 별도로 평가시기를 정하여 통보한다. • 인증유지 어린이집은 인증유효기간과 연계하여 평가시기 통보(유효기간만료 2개월 전 현장평가) •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가. 평가대상 선정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의6호)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하고, 선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삭제〉** • 인증유지 어린이집은 기존 인증유효기간과 연계하여 만료 전 평가 실시 • 미인증 어린이집은 대상선정 통보 후 6개월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 평가대상 선정	중단 후 재개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 ※ 단,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소재지가 변경(변경인가일)된 경우,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 단, 소재지 변경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후 평가결과 공표 전까지 종전 평가결과 유효 • 인증유지 어린이집이 행정처분 및 법 위반(처분일) 등으로 평가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처분월 기준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 • 미인증 어린이집은 대상선정 통보 후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 '19년도에 한해 미인증 어린이집 대상으로 신청을 병행하며, 신청을 하지 않은 미인증 어린이집은 '19년 내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예정임 •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은 전환 후 3개월 이내 평가대상으로 확정통보하고, 확정통보월을 기준으로 2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통보 익월 기본사항 확인)	경과 시 현장평가 ※ '20년도에 한해 미인증 어린이집 대상으로 신청을 병행하며, 신청을 하지 않은 미인증 어린이집은 평가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예정임 •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선정통보 ※ 기존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후 변경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정통보 진행 – 단,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신규개원 어린이집*은 기존의 평가결과와 유효기간을 유지하며, 확인점검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유지여부를 모니터링함 * 적용 기준일 : '20. 3. 1. 이후 국공립으로 전환한 신규개원 어린이집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 평가대상 통보 및 확인	나. 평가대상 통보 및 확인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평가일정을 해당 어린이집 및 지자체에 통보한다. ○ (통보시기)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6개월 전, 확정통보(2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2개월 전 실시한다. ※ 평가추진 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통보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신설〉** ※ 단, 통보된 일정에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환경개선 공사, 보육교직원 출산, 장기입원 등)으로 보건복지부(한국보육	나. 평가대상 통보 및 확인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평가일정을 해당 어린이집 및 지자체에 통보한다. ○ (통보시기)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6개월 전, 확정통보(2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2개월 전 실시한다. ※ 평가추진 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통보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현원이 0명으로 변경되었거나, 변경 예정인 경우 확정통보 시 제외 **〈삭제〉**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td>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 평가대상 통보 및 확인</td><td>진흥원)에서 판단하는 경우 평가시기 조정 가능
〈변경〉
(통보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개별 통보한다.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 대상선정 사실 및 평가일정을 통보(1차)하며, 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10일 이내 ‘평가대상 선정통보서’를 확인한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동의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시, 평가 거부, 기피 또는 방해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신설〉
• 선정통보(1차)에 의해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확정통보(2차) 함
<table><tr><th>업무주체</th><th>주요업무</th><th>내용</th></tr><tr><td>한국보육진흥원</td><td>평가대상 선정통보 (1차)</td><td>• 평가대상 어린이집 선정
• 어린이집지원 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선정통보
〈신설〉</td></tr></table></td><td>통보대상 및 절차
• (선정통보(1차)) 평가대상 어린이집 및 해당 지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상선정 사실 및 평가일정을 통보함
– (어린이집)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 대상선정 사실 및 평가일정을 통보(1차)하며, 대상 선정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10일 이내 ‘평가대상 선정통보서’를 확인한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동의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시, 평가 거부, 기피 또는 방해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의6호)
–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명단을 해당 지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보함
• (확정통보(2차)) 평가대상 어린이집 및 해당 지자체에 대상 확정 사실을 통보함
– (어린이집) 선정통보(1차)에 의해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정통보(2차)함
– (지자체)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대상으로 확정된 어린이집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함
<table><tr><th>업무주체</th><th>주요업무</th><th>내용</th></tr><tr><td>한국보육진흥원</td><td>평가대상 선정통보 (1차)</td><td>• 평가대상 어린이집 선정
→ 어린이집지원 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선정통보 안내
• 평가대상 선정 어린이집 명단 통보(진흥원→ 지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td>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
평가시기 조정</td><td>라. 평가시기 조정
◍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통보된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전·후로 평가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 (중 략) -------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 입원
※ 이 외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 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평가시기 조정 가능
〈신설〉</td><td>라. 평가시기 조정
◍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통보된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전·후로 평가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 (중 략) -------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 입원
〈삭제〉
※ 평가 참여시기를 조정신청한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는 원기수의 주기(유효기간)를 기준으로 적용됨</td></tr>
<tr><td>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
기본사항 확인</td><td>〈변경〉
가. 기본사항 확인
------- (중 략) -------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시에도 현장평가는 진행하되,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함(미준수 시 최하위 등급 부여)
• 확정통보월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 사전점검사항 : 5항목
<table><tr><th>항 목</th><th>평 정</th><th>평정기준</th></tr></table>------- (중 략) -------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등급)을 부여함
• 위반이력사항
<table><tr><th>구분</th><th>확인내용</th><th>결과반영</th></tr></table>------- (중 략) -------
* 확정통보월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위의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td><td>〈변경〉
가. 기본사항 확인
------- (중 략) -------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시에도 현장평가는 진행하되,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함(최종 미개선 시 최하위 등급 부여)
•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 사전점검사항 : 5항목
<table><tr><th>항 목</th><th>평 정</th><th>평정기준</th></tr></table>------- (중 략) -------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때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등급)을 부여함
• 위반이력사항
<table><tr><th>구분</th><th>확인내용</th><th>결과반영</th></tr></table>------- (중 략) -------
*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위의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td></tr>
</table>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변경〉** 나.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대상으로 확정통보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실시 및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 (중 략) -------- • 자체점검 시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위원회(3~7인 이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을 점검함 **〈신설〉** ※ 정당한 이유 없이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시,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자체점검보고서에는 평가항목별 점검결과(Y/N), 총평,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등을 작성함(부록1 참고) **〈신설〉**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시 확정통보월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여 제출함	나.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대상으로 확정통보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 (중 략) -------- • 자체점검 시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위원회(3~7인 이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을 점검함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시 심각하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급이 조정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시,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자체점검보고서에는 평가항목별 점검결과(Y/N), 총평,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등을 작성함(부록1 참고) ※ 법 위반(아동학대 포함) 및 행정처분은 대표자 변경 및 보육교직원 면직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포함)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시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여 제출함
현장평가 – 현장평가 주간통보	**〈변경〉** 가. 현장평가 주간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현장평가 직전월 말에 1주간의 현장평가 주간을 지정하여 통보하며, 해당 평가주간 중 현장평가일을 정하여 사전 고지 없이 현장관찰자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 (중 략) -------- **〈신설〉**	가. 현장평가 주간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현장평가 직전월 말에 1주간의 현장평가 주간을 지정하여 통보하며, 해당 평가주간 중 현장평가일을 정하여 사전 고지 없이 현장평가자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 (중 략) -------- ※ 현장평가월 이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영유아 재원)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현장평가 진행이 가능하며, 평가과정 중 '현원 0명'으로 확인될 경우 과정이 중단됨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td>현장평가
–
현장평가
실시</td><td>〈변경〉
나. 현장평가 실시
------- (중 략) -------
● 어린이집은 원활한 현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신설〉</td><td>나. 현장평가 실시
------- (중 략) -------
● 어린이집은 원활한 현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 평가과정 중 '현원 0명'으로 확인된 경우, 과정이 중단됨</td></tr>
<tr><td>현장평가
–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td><td>〈변경〉
다.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
------- (중 략) -------
▌어린이집 운영 기준 ▐
<table><tr><th>연번</th><th>항목</th><th>확인방법</th></tr><tr><td colspan="3">------- (중 략) -------</td></tr><tr><td>2</td><td>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td><td>- 증빙자료 : 보육교직원 관리 대장,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례
------- (중 략) -------
• 원장 및 보육교사가 역할변경 및 미수행한 경우(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역할을 바꾸어 근무하거나, 역할을 미수행)
*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종일제 보육교사, 대체교사 등 모두 포함
------- (중 략) -------</td></tr></table></td><td>다.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
------- (중 략) -------
▌어린이집 운영 기준 ▐
<table><tr><th>연번</th><th>항목</th><th>확인방법</th></tr><tr><td colspan="3">------- (중 략) -------</td></tr><tr><td>2</td><td>보육교직원 근무상황</td><td>- 증빙자료 : 보육교직원 관리 대장,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례
------- (중 략) -------
• 원장 및 보육교사가 역할변경 및 미수행한 경우(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역할을 바꾸어 근무하거나, 역할을 미수행)
* 반을 맡지 않은 담임교사, 대체교사 등 모두 포함
------- (중 략) -------</td></tr></table></td></tr>
<tr><td>종합평가</td><td>〈변경〉
'종합평가' 단계에서는 현장평가를 완료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가 진행된다.</td><td>'종합평가' 단계에서는 평가등급 결정(조정)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가 진행된다.</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td>종합평가
–
종합평가
진행</td><td>〈변경〉
나. 종합평가 진행
◍ 종합평가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설〉
<table><tr><th>구 분</th><th>내 용</th></tr><tr><td>(1단계)
소위원회</td><td>○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종합평가 기준에 맞추어 등급 및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 심의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
〈신설〉
- 확정통보월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중 략) --------</td></tr><tr><td>(2단계)
종합평가
위원회</td><td>■ 소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 후 전체 종합평가 대상 어린이집의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를 확정함
〈신설〉</td></tr></table></td><td>나. 종합평가 진행
〈삭제〉
▌종합평가 절차 및 내용▐
<table><tr><th>구 분</th><th>내 용</th></tr><tr><td>(1단계)
소위원회</td><td>○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종합평가 기준에 맞추어 등급 및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 심의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시 심각하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급조정 가능
-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중 략) --------</td></tr><tr><td>(2단계)
종합평가
위원회</td><td>■ 소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 후 전체 종합평가 대상 어린이집의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를 확정함
■ 기타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하여 어린이집의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를 확정함</td></tr></table></td></tr>
<tr><td>종합평가
–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td><td>〈변경〉
다.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
◍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에서 확정통보월 말일 이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변동사항 발생 사실을 통보한다.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의 변동사항 발생
-------- (중 략) --------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거나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신설〉
-------- (중 략) --------
◍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반영하여 평가주기를 조정한다.</td><td>다.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
◍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에서 선정통보월 이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변동사항 발생 사실을 통보한다.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의 변동사항 발생
-------- (중 략) --------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거나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 법 위반(아동학대 포함) 및 행정처분은 대표자 변경 및 보육교직원 면직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포함)
-------- (중 략) --------
◍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반영 및 평가주기를 조정한다.</td></tr>
</table>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합평가 –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및 확인점검 • 인가변동사항 : 평가를 중단하며 평가주기 조정 **〈신설〉** ◍ 변동사항 관련 업무 -------- (중 략) -------- • (어린이집)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은 평가대상 확정통보(2차)일 익월부터 결과통보 전까지 변동사항(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 즉시 통보함 -------- (중 략) -------- * 기존 인증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시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함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또는 확인점검 • 인가변동사항 : 과정중단 및 평가주기 조정 ※ 단,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 또는 직전 현장평가월 이후 4년이 경과한 어린이집은 과정중단 없이 평가 진행 ◍ 변동사항 관련 업무 -------- (중 략) -------- • (어린이집)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은 평가대상 선정통보월부터 결과통보 전까지 변동사항(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 즉시 통보함 -------- (중 략) -------- **〈삭제〉**
종합평가 – 등급 결정 및 평가주기	**〈변경〉** 라. 등급 결정 및 평가주기 ◍ 평가결과 등급은 현장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아래 등급 조정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 확정통보월 말일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함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 -------- (중 략) -------- • 확정통보월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 이력사항(기본사항-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차하위 등급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 (중 략) -------- **〈신설〉**	라. 등급 결정 및 평가주기 ◍ 평가결과 등급은 현장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아래 등급 조정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 선정통보월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함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 -------- (중 략) -------- •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사항(기본사항-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 (중 략) -------- • 이 외에 종합평가위원회에서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하여 어린이집의 평가등급 및 평가주기를 조정함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과공표 – 결과통보	**〈변경〉** 가. 결과통보 -------- (중 략) -------- **결과통보 전 설문지 작성 방법** • 결과통보 전 설문지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결과통보전 설문지 작성'을 클릭하여 입력 – [변동사항 확인서] 평가대상 확정통보 후 행정처분,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여부 확인 -------- (중 략) -------- **〈신설〉**	가. 결과통보 -------- (중 략) -------- **결과통보 전 설문지 작성 방법** • 결과통보 전 설문지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결과통보전 설문지 작성'을 클릭하여 입력 – [변동사항 확인서] 평가대상 선정통보월 이후 행정처분,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여부 확인 -------- (중 략) -------- ※ [변동사항 확인서] 작성 시 법 위반(아동학대 포함) 및 행정처분은 대표자 변경 및 보육교직원 면직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포함)
결과공표 – 소명	**〈변경〉** 나. 소명 ● 소명 절차 소명신청 ⇒ 사실조사(서면, 방문 등) ⇒ 소명심사위원회 개최 ⇒ 의결(인정/불인정) ⇒ 종합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및 후속조치 ● 소명 결과 -------- (중 략) -------- • 최종 평가결과를 공표함	나. 소명 ● 소명절차 소명신청 ⇒ 사실조사 ⇒ 소명심사위원회 개최 ⇒ 의결(인정/불인정) ⇒ 종합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및 후속조치 ● 소명결과 -------- (중 략) -------- **〈삭제〉**
결과공표 – 소명	**〈변경〉** 다. 결과공표 ● 평가결과(A~D등급) 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한다. -------- (중 략) -------- ※ 2회 연속 D등급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 우선 선정	다. 결과공표 ● 평가결과(A~D등급) 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한다. -------- (중 략) -------- **〈삭제〉**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td>결과공표
–
소명</td><td>▌어린이집 평가 결과공표 ▐
<table><tr><th colspan="2">구분</th><th>결과공표 내용</th></tr><tr><td rowspan="4">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 정보</td><td colspan="2">-------- (중 략) --------</td></tr><tr><td>평가 이후 변동사항 발생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td><td>평가 예정**</td></tr><tr><td>신규개원</td><td>평가 예정**</td></tr><tr><td colspan="3">-------- (중 략) --------</td></tr></table>-------- (중 략) --------
** ‘평가 예정’은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 시 운영 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평가 예정</td><td>▌어린이집 평가 결과공표 ▐
<table><tr><th colspan="2">구분</th><th>결과공표 내용</th></tr><tr><td rowspan="4">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 정보</td><td colspan="2">-------- (중 략) --------</td></tr><tr><td>〈삭제〉</td><td>〈삭제〉</td></tr><tr><td>신규개원</td><td>–</td></tr><tr><td colspan="3">-------- (중 략) --------</td></tr></table>-------- (중 략) --------
〈삭제〉</td></tr>
<tr><td>결과공표
–
결과활용</td><td>라. 결과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2항).
〈신설〉</td><td>라. 결과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2항).
※ 2회 연속 D등급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 우선 선정</td></tr>
<tr><td>평가 후 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td><td>〈변경〉
가.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중 략) --------
<table><tr><th>구 분</th><th>상반기</th><th>하반기*</th></tr><tr><td>제출대상 (평가결과 A, B등급)</td><td>평가결과 통보시기가 1~6월인 어린이집</td><td>평가결과 통보시기가 7~12월인 어린이집</td></tr><tr><td>보고서 제출 시기</td><td>5.1. ~ 5.31.</td><td>11.1. ~ 11.30.</td></tr></table>* 2019년 하반기부터 평가제 지표 적용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한다.
※ 2019년 상반기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td><td>가.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중 략) --------
<table><tr><th>구 분</th><th>상반기</th><th>하반기</th></tr><tr><td>제출대상 (평가결과 A, B등급)</td><td>평가결과 통보시기가 1~6월인 어린이집</td><td>평가결과 통보시기가 7~12월인 어린이집</td></tr><tr><td>보고서 제출 시기</td><td>5.1. ~ 5.31.</td><td>11.1. ~ 11.30.</td></tr></table>〈삭제〉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한다.
〈삭제〉</td></tr>
</table>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가 후 관리 – 사후방문 지원	**〈변경〉** 나. 사후방문지원(컨설팅)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후방문지원(컨설팅)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질 향상을 지원한다. -------- (중 략) -------- ◍ (내용)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지표, 보육과정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방문지원,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 방문지원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피드백, 향후 질 유지 방안 수립 및 실행과정 등을 지원함	나. 사후방문지원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후방문지원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질 향상을 지원한다. -------- (중 략) -------- ◍ (내용)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지표, 보육과정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방문지원,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 사후지원가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피드백, 향후 질 유지 방안 수립 및 실행과정 등을 지원함
평가 후 관리 – 확인점검	**〈변경〉** 라. 확인점검 -------- (중 략) -------- ◍ (대상) 평가내용과 관련된 민원 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평가 이후 대부분의 교사가 이직한 어린이집,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 필수요소(3영역) 일정기준 미충족 어린이집 등 **〈신설〉** ※ 대상의 선정기준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확인내용) 평가지표 전체 영역(4영역 18지표 59항목), 어린이집 운영기준(영유아 재원사항,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 확인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 (결과활용) 최초 확인점검 결과가 D등급이거나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자체개선 후 재확인점검 실시, 재확인점검 결과가 D등급이거나	라. 확인점검 -------- (중 략) -------- ◍ (대상) 평가내용과 관련된 민원 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평가 이후 대부분의 교사가 이직한 어린이집,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 필수요소(3영역) 일정기준 미충족 어린이집,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전 평가(인증) 결과를 승계한 어린이집 등 ※ 대상선정 세부기준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 공지예정 ◍ (확인내용) 평가지표 전체 영역(4영역 18지표 59항목), 어린이집 운영기준(영유아 재원사항,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 확인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 (결과활용) 최초 확인점검 결과가 D등급이거나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자체개선 후 재확인점검 실시, 재확인점검 결과가 D등급이거나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가 후 관리 – 확인점검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 등급 조정, 사후방문지원을 연계한다. ------- (중 략) ------- ※ 단, 2019년 9월부터 변경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하여 2020년 3월까지 인증유효기간 감축 또는 평가등급 조정 없이 재확인 점검 실시함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 등급 조정, 사후방문지원을 연계한다. ------- (중 략) ------- **〈삭제〉**
	〈변경〉 마.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 (중 략) ------- ● 처리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래의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함 ------- (중 략) ------- ※ 시·군·구는 상기의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 시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 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안내	마.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 (중 략) ------- ● 처리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래의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함 ------- (중 략) ------- ※ 시·군·구는 상기의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 시 등급조정 대상임을 어린이집 안내
평가 후 관리 – 평가주기 조정관리	**〈변경〉** 바. 평가주기 조정관리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주기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를 조정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인가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신설〉** ------- (중 략)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보육교직원(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인 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바. 평가주기 조정관리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를 조정하여 사유발생일(변경인가일, 재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선정통보를 진행한다. ※ 단, 매월 평가진행 개소수에 따라 평가월은 조정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단, C, 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후방문지원 완료 후 선정통보를 진행함 ------- (중 략) ------- **〈삭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가 후 관리 – 평가주기 조정관리	경우, 제3자간 대표자간 변경 등 대표자 변경 사유 모두 포함	
	------- (중 략) -------	------- (중 략) -------
	※ 평가제 시행 이후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후 변경인가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삭제〉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변경인가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단, 소재지 변경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후 평가결과 공표 전까지 종전 평가결과 유효	〈삭제〉
	•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 후 재개한 경우 : 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 후 재개한 경우
	※ 평가제 시행 이후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에서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후 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현장평가 진행	〈삭제〉
	◎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은 전환 후 3개월 이내 평가대상으로 확정통보되며, 확정통보월을 기준으로 2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통보 익월 기본사항 확인)	◎ 평가주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주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기존 인증유지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함	〈삭제〉
	◎ 처리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평가받은 어린이집에 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포함) 즉시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함	◎ 처리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평가받은 어린이집에 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함
	------- (중 략) -------	------- (중 략) -------
	※ 단, 인증유지 어린이집의 경우,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에 해당하는 사유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하고 평가시기 통보	〈삭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과조치 – 적용 대상	가. 적용 대상 ○ 평가제 시행에 따른 운영체계 및 지표는 2019년 9월 현장평가 대상인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중 략)------- • 2019년 상반기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함	**〈삭제〉**
경과조치 –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 기간 종료	**〈변경〉** 나.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 -------(중 략)------- ○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참여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중 략)------- ○ 인증유효기간 종료 ①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대표자 변경 전까지 인증유효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 어린이집 휴지	가.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 -------(중 략)------- **〈삭제〉** -------(중 략)------- **〈삭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과조치 –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 기간 종료	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 신고일 전일까지 인증유효 ○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중 략)-------- **〈신설〉**	○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중 략)-------- **참고**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 구(舊)법의 규정에 따름** ○ (처리과정) 지자체에서는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으로 통보(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평가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현장평가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인 경우 • 현장평가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 현장평가자가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 원장이 현장평가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참여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인증유효기간 종료 ①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변경 전까지 인증유효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어린이집 휴지 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 신고일 전일까지 인증유효
3. 평가지표		
평가 지표의 구성 체계	다. 용어설명 ◯ '종일제 보육교사'란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보육교사를 말한다. • 반을 맡고 있지 않으나, 담임교사로 등록된 보육교사를 포함함	다. 용어설명 **〈삭제〉**

지표 주요 변경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변경〉** **1-1-1-①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함** **관찰** ● 교사는 영유아가 언제든지 개별적 요구를 표현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	**1-1-1-①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함** **관찰** ● 교사는 영유아가 언제든지 개별적 요구와 의사를 표현하고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	내용 보완
	〈변경〉 **1-1-1-③ 교사는 인정과 격려를 통해 영유아의 말과 행동, 생각 및 감정을 지지해 줌** **관찰** -------- (중 략) -------- ● 교사는 영유아의 배경에 따른 말과 행동의 차이에 대해 특이하다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음.	**1-1-1-③ 교사는 인정과 격려를 통해 영유아의 말과 행동, 생각 및 감정을 지지해 줌** **관찰** -------- (중 략) -------- ● 교사는 영유아의 배경에 따른 말과 행동의 차이에 대해 특이하다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표현을 하지 않음.	내용 보완
	〈변경〉 **1-2-1-① 표준보육과정과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하여 연간보육계획을 수립함** **기록** ●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 및 목표와 어린이집의 철학에 기초하여 연간보육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음. **〈신설〉** **면담** ● (원장) 어린이집의 철학은 무엇이고, 연간보육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연간보육계획 수립 시 표준보육과정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 (교사) 연간보육계획을 어떻게 작성하였는가? 어린이집의 철학이 연간보육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연간보육계획 수립 시 표준보육과정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1-2-1-① 표준보육과정과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하여 연간보육계획을 수립함** **기록** ●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 및 목표와 어린이집의 철학에 기초하여 연간보육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음. - 연간보육계획에는 계절, 명절, 행사 등 어린이집의 일 년간의 중요한 경험이 포함되어 있음. **면담** ● (원장) 어린이집의 보육철학은 무엇이고, 연간보육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연간보육계획 수립 시 표준보육과정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삭제〉**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변경〉** **1-2-1-②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월간 또는 주간 또는 일일보육계획을 반별로 수립함** **기록** ●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월간 또는 주간 또는 일일보육계획이 반별로 수립되어 있음. - 혼합연령반의 경우, 그 반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발달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간 또는 주간 또는 일일보육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음.	**1-2-1-②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여 반별로 월간, 주간, 일일보육계획안 중 한 가지를 수립함** **기록** ●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월간, 주간, 일일보육계획안 중 한 가지가 반별로 수립되어 있음. **〈삭제〉**	내용 보완 기준 변경
	〈변경〉 **1-2-2-① 등원 시 영유아를 반갑게 맞이하고, 하원 시 안정된 분위기에서 귀가하도록 지도함** **관찰** -------- (중 략) -------- ● 교사는 일부 영유아가 귀가를 시작하더라도 남아 있는 영유아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일과를 진행함. - 실내외 자유놀이 시간으로 일과를 진행하고, 귀가하지 않은 영유아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함.	**1-2-2-① 등원 시 영유아를 반갑게 맞이하고, 하원 시 안정된 분위기에서 귀가하도록 지도함** **관찰** -------- (중 략) -------- ● 교사는 일부 영유아가 귀가를 시작하더라도 남아 있는 영유아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일과를 진행함. - 실내외 놀이시간으로 일과를 진행하고, 귀가하지 않은 영유아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함.	내용 보완
	〈변경〉 **1-2-2-② 식사와 간식 시간에 서두르지 않고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함** **관찰** -------- (중 략) -------- **영아** -------- (중 략) -------- ● 스스로 먹기가 가능한 영아일 경우,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식습관 지도를 병행함. - 일괄적으로 국에 밥을 말아 주지 않고 연령에 적합한 식사도구를 제공하여야 함.	**1-2-2-② 식사와 간식 시간에 서두르지 않고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함** **관찰** -------- (중 략) -------- **영아** -------- (중 략) -------- ● 영아의 경우, 월령이나 발달단계에 적합한 식사도구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일괄적으로 국에 밥을 말아 제공하지 않는 등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지도함.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신설〉	**궁금해요** Q. 만1세반 영아라 숟가락과 포크 사용을 어려워하는데, 숟가락과 포크를 모두 제공해 주어야 하나요? A. 만1세반 영아에게도 숟가락과 포크를 제공하여 도구를 사용해 음식을 먹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영아들은 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례 보완
	〈변경〉 **1-2-2-④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해 줌** **관찰** ● 만3세 이하의 종일반 영유아는 일과 중 반드시 낮잠시간을 계획, 실행함. -------- (중 략) -------- 〈신설〉	**1-2-2-④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해 줌** **관찰** ● 만3세 이하의 영유아는 일과 중 반드시 낮잠시간을 계획, 실행함. -------- (중 략) -------- **기록** ● 만3세 이하의 영유아로 구성된 반은 매일 낮잠시간을 계획하여 운영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궁금해요** Q. 만4,5세 유아의 경우에도 일과 중 반드시 낮잠시간을 계획, 실행해야 하나요? A. 만3세 이하의 영유아는 반드시 낮잠시간을 계획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4,5세반은 개별 유아의 상태 및 원 상황에 따라 낮잠 또는 휴식시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낮잠을 계획하지 않고 휴식시간을 갖는 경우 개별 침구를 반드시 구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낮잠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분의 침구를 구비하고 침구 및 침구 보관 장소를 청결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요** Q. 일부 영유아의 경우, 잠들기 힘들어 하거나 부모님이 낮잠 재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만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낮잠(휴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유아마다	내용 보완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개별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모든 영유아를 일괄적으로 재우기보다는 잠들기 힘들어 하는 영유아의 경우 편안하게 누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낮잠을 자는 다른 영유아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1-2-3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자유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1-2-3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내용 보완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변경〉** **1-2-3-① 매일 실내 자유놀이시간을 기준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 **- 6시간 이하 이용(맞춤반 영아) : 매일 1시간 이상** **- 6시간 초과 이용(종일반 영아, 유아) : 매일 2시간 이상** **관찰** ● 영유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나 활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루 중 오전, 오후를 합쳐 2시간 이상 자유놀이 시간을 운영함. - 이때, 오전 1시간 이상은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맞춤반 영아로만 구성된 반(만0-1세, 만2세)은 매일 1시간 이상 운영하는 경우 인정됨. ※ 자유놀이 시간에 대한 평정은 해당 반 영유아 현원의 50% 이상이 등원한 시점부터 시작함. ● 프로그램의 특성 상 바깥놀이 위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실외 자유놀이를 오전, 오후를 합쳐 2시간 이상 운영함. **〈신설〉** ※ 이때 바깥놀이 시간은 별도로 산정함. ※ 바깥놀이에는 실외 자유놀이, 산책, 텃밭 가꾸기 등이 포함됨. ※ 실외 자유놀이란 실외에서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주도하는 놀이와 활동을 의미하며, 실외에서 이루어	**1-2-3-① 매일 실내 놀이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 **〈삭제〉** **관찰** ● 영유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나 활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루 중 오전, 오후를 합쳐 2시간 이상 실내 놀이시간을 운영함. - 이때, 오전 1시간 이상은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삭제〉** ※ 실내 놀이시간에 대한 평정은 해당 반 영유아 현원의 50% 이상이 등원한 시점부터 시작함. ● 실외 놀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실외 놀이시간을 매일 오전, 오후 합쳐 2시간 이상 운영함. - 이때, 오전 1시간 이상은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이때 바깥놀이 시간은 별도로 산정함. ※ 바깥놀이에는 실외 놀이, 산책, 텃밭 가꾸기 등이 포함됨. ※ 실외 놀이란 실외에서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주도하는 놀이와 활동을 의미하며, 실외에서 이루어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지는 교사 주도의 대집단 활동, 행사 등은 실외 자유놀이에 포함되지 않음. **기록** ● 실내 자유놀이를 매일 오전, 오후 합쳐 2시간 이상 실시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 실내 자유놀이 시간을 기준시간 내에서 매일 오전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한 기록이 있음. ● 프로그램의 특성 상 바깥놀이 위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실외 자유놀이를 매일 오전, 오후 합쳐 2시간 이상 실시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 실외 자유놀이 시간을 기준시간 내에서 매일 오전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한 기록이 있음. **〈신설〉**	지는 교사 주도의 대집단 활동, 행사 등은 실외 놀이에 포함되지 않음. **기록** ● 실내 놀이를 매일 오전, 오후 합쳐 2시간 이상 실시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 실내 놀이시간을 매일 오전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한 기록이 있음. ● 실외 놀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실외 놀이시간을 매일 오전, 오후 합쳐 2시간 이상 운영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 실외 놀이시간을 매일 오전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한 기록이 있음. **궁금해요** Q. 실내 놀이시간의 경우, 매일 2시간 이상 계획하되, 오전은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정리정돈 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으로 계획해도 되나요? A. 실내 놀이시간은 영유아가 개별적 흥미와 관심에 따라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충분한 놀이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하고, 놀잇감을 정리하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의 전이시간은 별도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요** Q. 실외 놀이를 1시간 계획하였으나 유아의 놀이 흐름에 따라 실외 놀이를 30분 연장하여 실시한 날에도 실내 놀이를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이 놀이에 충분히 몰입하고,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놀이시간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흥미, 놀이 흐름 등에 따라 실외 놀이시간을 기준시간 이상으로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아반에서는 바깥놀이를 매일 1시간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이상 실시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외 놀이 1시간을 포함하여 총 놀이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유아반에서 실외 놀이가 1시간 30분 이루어졌으므로, 실내 놀이를 1시간 30분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변경〉 **1-2-3-② 일과를 시간 단위로 분절하여 교과목 형태의 활동을 진행하지 않음** **관찰** ● 하루 일과가 교과목(언어, 수, 과학, 미술, 음악, 체육 등) 형태로 분절되지 않고, 실제로 자유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짐. **기록** ● 하루 일과가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맞게 자유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1-2-3-② 일과를 시간 단위로 분절하여 교과목 형태의 활동을 진행하지 않음** **관찰** ● 하루 일과가 교과목(언어, 수, 과학, 미술, 음악, 체육 등) 형태로 분절되지 않고, 실제로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짐. **기록** ● 하루 일과가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맞게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내용 보완
	〈변경〉 **1-2-4-① 매일 바깥놀이를 기준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 **관찰** ● 바깥놀이를 기준시간 이상으로 운영함. ※ 바깥놀이에는 실외 자유놀이, 산책, 텃밭 가꾸기, 물·모래놀이 등이 포함됨. ------- (중 략) ------- **기록** ------- (중 략) ------- ● 날씨(한파, 폭염)와 기상현상(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바깥놀이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융통성 있게 실내 대체활동을 마련하여 운영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 실내 대체활동은 대근육 활동으로 진행하되, 일부 자유놀이로 진행한 경우도 인정함. ------- (중 략) -------	**1-2-4-① 매일 바깥놀이를 기준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 **관찰** ● 바깥놀이를 기준시간 이상으로 운영함. ※ 바깥놀이에는 실외 놀이, 산책, 텃밭 가꾸기, 물·모래놀이 등이 포함됨. ------- (중 략) ------- **기록** ------- (중 략) ------- ● 날씨(한파, 폭염)와 기상현상(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바깥놀이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융통성 있게 실내 대체활동을 마련하여 운영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 실내 대체활동은 대근육 활동으로 진행하되, 일부 대근육활동이 아닌 영유아의 흥미에 따라 진행한 놀이도 포함할 수 있음. ------- (중 략) -------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신설〉	**면담** ● (교사) 바깥놀이 대신 실내에서 대체활동을 진행한 사유는 무엇인가? **궁금해요** Q. 유아의 경우 바깥놀이 시간을 오전 30분, 오후 30분으로 나누어 배정해도 되나요? 그리고 혼합연령반의 경우 바깥놀이 시간은 어떻게 배정해야 하나요? A. 바깥놀이는 하루 일과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 가능하며, 혼합연령반의 경우,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바깥놀이 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예: 만0,1세 혼합반의 경우 주 3회, 30분 이상으로 운영 가능). **궁금해요** Q. 바깥놀이 시간에 손 씻기, 화장실 가기 등의 시간을 포함해도 되나요? A. 바깥놀이는 영유아가 일과 중에 실내를 벗어나 실외에서 자연을 경험하며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충분한 놀이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손 씻기, 화장실 가기 등의 전이시간은 별도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요** Q. 날씨 등의 요인으로 바깥놀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에도 반드시 실외에서 바깥놀이를 진행해야 하나요? A. 황사, 미세먼지, 폭염 또는 한파 등의 이유로 바깥놀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내에서 대체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대체활동 진행 시에는 영유아가 다양한 대근육 활동 및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되, 일부 대근육 활동이 아닌 영유아의 흥미에 따라 진행한 놀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보육일지에 실행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바깥놀이를 실내 대체활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변경〉 **1-2-5-①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동의서를 받은 영유아에 한해서만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관찰** ●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동의서를 받은 영유아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음. - 단,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요청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중 략) -------- **기록** ●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영유아의 부모동의서에는 필요한 정보(프로그램명, 영유아의 이름, 부모서명)가 누락되지 않고 기재되어 있음. 〈신설〉	**1-2-5-①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동의서를 받은 영유아에 한해서만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관찰** ●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동의서를 받은 영유아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음. - 단,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연령 혼합반으로 편성되어 보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요청)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중 략) -------- **기록** ●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영유아의 부모동의서에는 필요한 정보(프로그램명, 영유아의 이름, 참여 동의 여부, 부모서명)가 누락되지 않고 기재되어 있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기록이 있음.	내용 보완
	〈변경〉 **1-2-5-②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자유놀이 등을 운영하고 있음** **관찰** ●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자유놀이 등이 운영되고 있음. **기록** ● 보육일지 등에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일과(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자유놀이 등)가 운영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1-2-5-②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와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음** **관찰** ●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와 활동 등이 운영되고 있음. **기록** ● 보육일지 등에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일과(놀이와 활동 등)가 운영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2-5-③ 특별활동은 오후에 운영됨** -------- (중 략) -------- **〈신설〉**	**1-2-5-③ 특별활동은 오후에 운영됨** -------- (중 략) -------- **궁금해요** Q. 특별활동은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연령혼합반으로 편성되어 보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요청)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만1,2세 혼합반인 경우도 실시 가능한가요? A. 만1,2세 혼합반의 경우, 보호자의 요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특별활동 실시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요** Q. 지역사회 시민단체, 지자체 사업(노인 일자리 등)으로 진행하는 축구, 수영, 영어, 한자, 악기(장구 등) 배우기 등도 특별활동에 해당되나요? A.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축구, 영어, 한자 등과 같이 기술 연마,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분절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활동은 실시 주체 및 비용 수납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활동 운영규정에 따라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동의서를 구비하여 오후 시간대에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요** Q. 특별활동 강사의 사정으로 오전에 보강을 실시해도 되나요? A.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일과 중 오후 시간대에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활동 강사의 사정으로 보강을 실시할 경우에도 오후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변경〉** **1-2-6-①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계획, 제공하고 있음** **기록** ● 장애영유아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발달 수준에 따라 개별화보육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음. - 개별화보육계획안은 장애영유아의 현행수준, 장·단기 보육목표, 평가계획 및 부모동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1-2-6-①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계획, 제공하고 있음** **기록** ● 장애영유아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발달 수준에 따라 개별화보육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음. - 개별화보육계획안에는 기본사항(영유아의 이름, 생년월일, 교육기간, 작성자 이름(서명), 부모 이름(서명)), 장애영유아의 현행수준, 장·단기 보육목표, 평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내용 보완
	〈변경〉 **1-3-1-① 교사는 실내 자유놀이 및 바깥놀이 시간에 영유아가 자유롭게 탐색하여 놀이나 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 **관찰** ● 교사는 실내 자유놀이 및 바깥놀이 시간에 영유아가 놀이와 활동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놀이와 활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1-3-1-① 교사는 놀이시간에 영유아가 자유롭게 탐색하여 놀이나 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 **관찰** ● 교사는 놀이시간에 영유아가 놀이와 활동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놀이와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함.	내용 보완
	〈변경〉 **1-3-1-② 교사는 개별 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이와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격려함** **관찰** ------- (중 략) ------- **영아** ● 교사는 영아 스스로가 자신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찰하며, 적절하게 반응하고 격려함.	**1-3-1-② 교사는 개별 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이와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격려함** **관찰** ------- (중 략) ------- **영아** ● 교사는 영아 스스로가 놀이와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찰하며, 적절하게 반응하고 격려함.	내용 보완
	〈변경〉 **1-3-1-③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회하거나 방관하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가 놀이에 자발적인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 **관찰**	**1-3-1-③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회하거나 방관하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가 놀이에 자발적인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 **관찰**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 (중 략) ------- **유아** ● 교사는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아에게 또래가 하고 있는 놀이나 활동에 대해 안내하고 참여 여부를 질문함.	------- (중 략) ------- **유아** ● 교사는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아에게 또래가 하고 있는 놀이나 활동에 대해 안내하고 참여 의사를 확인함.	
	〈변경〉 **1-3-2-① 교사는 실내 자유놀이 및 바깥놀이 시간에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전체를 수시로 살펴 영유아의 놀이 진행과정을 파악함**	**1-3-2-① 교사는 놀이시간에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전체를 수시로 살펴 영유아의 놀이 진행과정을 파악함**	내용 보완
	〈변경〉 **1-3-2-②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함** **관찰** **〈신설〉** ------- (중 략) ------- ●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에 적절한 놀이 개입을 함. - 영유아가 교사를 놀이에 초대할 때 - 놀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가 있을 때 - 놀이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학습을 위한 결정적 순간일 때 ------- (중 략) ------- ● 교사는 영유아의 사고를 확장시키거나 영유아가 스스로 새로운 질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발문을 함. - 영아의 예 ------- (중 략) ------- - 유아의 예 ------- (중 략) ------- ● 교사는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수준에 적합하게 놀이와 활동을 지원함.	**1-3-2-②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함** **관찰** ●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놀이가 유지되는 과정을 쫓아가며 비언어적(따뜻한 표정과 끄덕임 등), 언어적 지원을 함. ------- (중 략) ------- ●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에 적절한 놀이 개입을 함. - 영유아가 교사를 놀이에 초대할 때 - 놀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가 있을 때 - 놀이 자료가 필요한 경우 - 놀이 아이디어를 확장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 학습을 위한 결정적 순간일 때 ------- (중 략) ------- ● 교사는 언어적 표현과 함께 몸짓, 표정 등의 비언어적 행동을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함. **〈삭제〉**	내용 보완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h>비고</th></tr>
<tr><td rowspan="2">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td><td>〈변경〉
1-3-2-③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에 즐겁게 참여함

관찰
● 교사는 실내 자유놀이 및 바깥놀이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영유아와 함께 놀이함.</td><td>1-3-2-③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에 즐겁게 참여함

관찰
● 교사는 놀이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영유아와 함께 놀이함.</td><td>내용
보완</td></tr>
<tr><td>〈변경〉
1-3-3-① 교사는 영유아의 연령, 발달수준, 사전경험을 고려하여 놀이 및 활동자료를 준비함

관찰

------- (중 략) -------
● 영유아의 놀이나 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
- 자유놀이 시 상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놀잇감은 충분히 마련함.
• 예 : 종이벽돌, 소품으로 사용할 인형, 자동차, 소꿉 놀잇감, 그림책, 색연필 등

〈신설〉</td><td>1-3-3-① 교사는 영유아의 연령, 발달수준, 사전경험을 고려하여 놀이 및 활동자료를 준비함

관찰

------- (중 략) -------
● 영유아의 놀이나 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
- 놀이 시 상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놀잇감은 충분히 마련함.
• 예 : 블록류, 인형류, 역할놀이 소품, 소꿉놀이류, 그림책, 종이류, 필기구류(크레파스, 색연필, 연필, 사인펜 등) 등

궁금해요
Q. 영유아의 놀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하나요?
A.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라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육실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놀이, 영유아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놀이 및 활동자료를 다양하고 충분하게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영유아가 놀이 시 상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블록류, 인형류, 역할놀이 소품, 소꿉놀이류, 그림책, 종이류, 필기구류(크레파스, 색연필, 연필, 사인펜 등) 등의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 비치하도록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④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td><td>내용
보완

세부
사례
보완</td></tr>
</table>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변경〉** **1-3-3-②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 및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 **관찰** ● 계획안의 놀이 및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보육실 또는 옥외놀이터에 구비함. ● 계획안에 있는 활동은 아니지만, 영유아의 흥미나 요구에 의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나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함. **면담** ● (교사) 계획안에 있는 활동은 아니지만 요즘 영유아가 흥미 있어 하는 놀이 및 활동은 무엇인가? 놀이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놀잇감(자료)을 제공하였는가?	**1-3-3-②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 및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 **관찰** ● 영유아가 지속하고 있거나, 새롭게 시작한 놀이 및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보육실 또는 옥외놀이터에 구비함. ● 영유아가 현재 하고 있는 놀이나 활동은 아니지만 영유아의 흥미나 놀이 경험을 반영하여 준비한 자료가 있음. **면담** ● (교사) 요즘 영유아가 흥미 있어 하는 놀이 및 활동은 무엇인가? 영유아의 흥미나 놀이 경험을 반영하여 준비한 놀이자료가 있는가?	내용 보완
	〈변경〉 **1-3-3-③ 놀잇감과 활동자료는 영유아가 수월하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함** **관찰** ● 영유아가 자유놀이나 활동을 할 때 자유롭게 꺼내어 쓸 수 있도록 놀잇감과 활동자료를 개방된 교구장 또는 바구니 등에 보관함. ● 놀잇감과 활동자료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영유아가 찾기 쉽도록 정리하여 배치함. **〈신설〉**	**1-3-3-③ 놀잇감과 활동자료는 영유아가 수월하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함** **관찰** ● 영유아가 놀이나 활동을 할 때 자유롭게 꺼내어 쓸 수 있도록 놀잇감과 활동자료를 개방된 교구장 또는 바구니 등에 보관함. ● 놀잇감과 활동자료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영유아가 찾기 쉽도록 정리하여 배치함. – 놀잇감과 활동자료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에 따라 바꾸어 배치할 수 있음. • 예: 유아의 가게놀이에 필요한 쓰기 자료(종이, 색연필 등)를 역할놀이 영역에 배치함. **궁금해요** Q. 만0,1세반 어린 영아들의 경우,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자꾸 입에 넣으려 합니다. 이런 경우 안전을 위해 높은 장 위에 쓰기 자료를 올려두었다가 영아들이 원할 때만 제시해 주어도 괜찮을까요? A. 만0,1세 영아들도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내용 보완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끼적이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영아들의 손이 닿는 곳에 쓰기자료를 항상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이때, 안전을 고려하여 독성이 없는 색연필, 크레용, 자석그림판 등의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경〉 **1-5-1 반별 보육일지에 하루 일과 및 놀이 실행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 있고, 필요한 경우 평가내용을 다음 보육 계획에 반영한다.**	**1-5-1 반별 보육일지에 하루 일과 및 놀이 실행에 대한 기록이 있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 놀이 지원 및 활동 계획에 반영한다.**	내용 보완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변경〉** **1-5-1-① 반별 보육일지에 영유아의 하루 일과와 놀이실행에 대한 평가 기록이 있음** **기록** ● 영유아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놀이와 활동을 하였는지, 어떻게 놀이와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보육일지에 반별로 기록되어 있음. - 영유아의 하루 일과가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음. - 개별 영유아 또는 또래 집단의 놀이와 활동을 기록하고 있음. - 교사가 계획한 활동, 계획하지 않았지만 일어난 놀이와 활동을 기록하고 있음. - 놀이와 활동을 실행한 후, 이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음. **〈신설〉**	**1-5-1-① 반별 보육일지에 영유아의 하루 일과와 놀이실행에 대한 기록이 있음** **기록** ● 영유아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놀이와 활동을 하였는지, 어떻게 놀이와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보육일지에 반별로 매일 기록되어 있음. - 영유아의 하루 일과가 기록되어 있음. - 영유아가 실제 경험한 놀이 및 활동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 놀이 및 활동에 대한 기록에는 영유아들이 흥미를 보인 놀이 및 활동의 실행 기록, 주요 놀이에 대한 평가 또는 다음 놀이를 위한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음. **궁금해요** Q. 보육일지는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A. 하루 일과와 놀이실행에 대한 기록은 다음 보육에 반영되어 보육과정 운영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하루 일과'와 '실제 경험한 놀이 및 활동의 내용'을 보육일지 등에 매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보육일지 작성 시에 모든 '하루 일과'를 시간 순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실내 놀이시간 및 바깥놀이 시간, 낮잠시간(만 3세 이하)등은 기재해야 하고, '놀이 및 활동에 대한 기록'에는 영유아들이 흥미를 보인 놀이 및 활동의 기록, 주요 놀이에 대한 평가 또는 다음 놀이를 위한 지원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계획 등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보육일지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린이집의 특성에 적합한 양식으로 사용하되, 지표 및 항목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변경〉 **1-5-1-② 보육일지에 평가한 내용을 필요한 경우 다음 보육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기록** ● 필요한 경우 보육일지에 기록한 놀이와 활동, 일상생활 등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이후 놀이지원 계획 또는 보육계획을 수립한 기록이 있음. • 예 : 4월 7일(화) 보육일지에 '유아들이 쌓기 영역에서 봄 동산 만들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꽃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함. 미술영역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꽃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질감의 종이에 대한 관심을 보임' 이라는 평가를 했고, 4월 8일(수) 보육일지에 자유놀이 시간에 다양한 질감의 종이를 제공하고 꽃을 만들어 놀이한 기록이 있음.	**1-5-1-② 필요한 경우 하루일과 및 놀이 실행에 대한 기록을 다음 놀이 지원 및 활동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기록** ● 필요한 경우 보육일지에 놀이와 활동, 일상생활 등을 기록한 내용에 기초하여 이후 놀이 지원 및 활동 계획에 반영한 기록이 있음. • 예 : 4월 7일(화) 보육일지에 '유아들이 쌓기 영역에서 봄 동산 만들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꽃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함. 미술영역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꽃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질감의 종이에 대한 관심을 보여서 내일은 다양한 질감의 종이를 제공해야겠음' 이라고 기록하였고, 4월 8일(수) 보육일지에 놀이시간에 다양한 질감의 종이를 제공하여 놀이한 기록이 있음.	기준 변경 내용 보완
	〈변경〉 **1-5-2 개별 영유아의 일상생활, 실내외 놀이 및 활동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	**1-5-2 영유아의 일상생활, 실내외 놀이 및 활동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	내용 보완
	1-5-2-① 일상생활, 놀이, 활동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함 **기록** ------- (중 략) ------- ●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에 대한 관찰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루어짐. **〈신설〉**	**1-5-2-① 일상생활, 놀이, 활동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함** **기록** ------- (중 략) ------- ●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에 대한 관찰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루어짐. ※ 현장평가월 기준 3개월 이내 실시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기록 확인 ※ 검토기간 내 놀이와 활동, 일상생활을 모두 포함하여 관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평정함.	
	〈변경〉 **1-5-2-② 영유아 관찰 결과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함** **기록** ● 영유아 관찰 기록을 종합하여 영유아별로 발달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한 내용이 있음. -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에 대해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을 준거로 하여 평가함.	**1-5-2-② 영유아 관찰 결과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함** **기록** ● 영유아 관찰 기록을 종합하여 영유아별로 발달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한 내용이 있음. -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에 대해 표준보육과정을 토대로 평가함.	내용 보완
	〈변경〉 **1-5-2-④ 장애영유아 개별 장애영유아의 교육진단과 발달평가를 위한 진단·평가 도구 및 참고자료를 구비하여 활용하고 있음** **관찰** ● 개별 장애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진단·평가 도구 및 참고자료가 구비되어 있음. - 이때, 진단·평가 도구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1-5-2-④ 장애영유아 개별 장애영유아의 교육진단과 발달평가를 위한 진단·평가 도구 및 참고자료를 구비하여 활용하고 있음** **관찰** ● 개별 장애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진단·평가 도구 및 참고자료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음. - 현행 수준 진단을 위한 평가 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이때 발달평가 도구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내용 보완
	〈변경〉 **1-5-3-① 원장은 반별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집 전체의 보육과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음** **면담** ● (원장) 반별 보육과정 운영에 대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반별 보육과정 운영 평가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가(계획안, 환경구성, 상호작용 등)?	**1-5-3-① 원장은 반별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집 전체의 보육과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음** **면담** ● (원장) 반별 보육과정 운영에 대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반별 보육과정 운영 평가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가(보육일지, 환경구성, 상호작용 등)?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변경〉** **2-1-1 보육실 내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놀이와 연계하여 구성한다.**	**2-1-1 보육실 내 놀이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특성 및 놀이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내용 보완
	〈변경〉 **2-1-1-① 보육실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특성,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을 반영한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관찰** ● 보육실 공간이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 구성 여부는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다름. ● 흥미영역 및 놀이영역의 수는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 특성,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보육실의 공간이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성격의 놀이 및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음. ● 흥미영역이란, 영유아의 놀이나 활동 특성에 따라 보육실 공간을 나누고 각 놀이 특성에 따라 자료들을 모아서 영역별로 배치하는 것을 말함. ● 흥미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음. - 연령별 흥미영역 구성의 예 -------- (중 략) -------- -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의 경우, 어린이집 전체 공간에 흥미영역을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된 흥미영역은 영유아들이 일과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놀이영역은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 특성,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맞게 구성된 놀이공간임.	**2-1-1-① 보육실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특성,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을 반영한 놀이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관찰** ● 보육실 공간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특성, 놀이에 따라 놀이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놀이영역은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 특성,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맞게 구성된 놀이공간임. ※ 흥미영역으로도 구성 가능하나 영유아의 놀이가 반영되어 있는 놀이영역 구성이 우선되어야 함. - 연령별 흥미영역 구성의 예 -------- (중 략) -------- - 놀이영역 구성의 예: 물감놀이, 점토놀이, 팽이놀이, 가게놀이, 공룡테마파크놀이 등 ● 놀이영역의 수는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 특성,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보육실의 공간이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성격의 놀이 및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음. -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의 경우, 어린이집 전체 공간에 놀이영역을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된 놀이영역은 영유아들이 일과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 몬테소리, 레지오 에밀리아, 발도르프 프로그램, 프로젝트 접근법 등 해당 어린이집의 특성에 맞는 놀이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바깥놀이 위주의 프로그램을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실은 하나의 놀이영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변경〉 **2-1-1-②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은 영유아의 놀이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음** **관찰** ●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은 해당 공간에서 놀이하는 영유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놀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음.	**2-1-1-② 놀이영역은 영유아의 놀이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음** **관찰** ● 놀이영역은 해당 공간에서 놀이하는 영유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놀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음.	내용 보완
	〈변경〉 **2-1-2-①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연령 및 신체에 적합한 크기와 높이로 되어 있어 영유아 스스로 사용하기에 용이함** **관찰** -------- (중 략) -------- ● 세면대, 변기 등 일상생활을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고,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임. -------- (중 략) -------- ※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의 경우, 영유아가 성인용 변기 및 세면대 사용 시 반드시 안전발판, 보조변기 등을 활용하도록 함.	**2-1-2-①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연령 및 신체에 적합한 크기와 높이로 되어 있어 영유아 스스로 사용하기에 용이함** **관찰** -------- (중 략) -------- ● 세면대, 변기 등 일상생활을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고,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임. -------- (중 략) -------- ※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의 경우, 영유아가 성인용 변기 및 세면대 사용 시 반드시 안전발판, 보조변기 등을 활용하도록 함. 안전발판은 성인용 변기 및 세면대에 각각 마련하여야 함.	내용 보완
	〈변경〉 **2-1-3-①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의 별도의 공간(유희실, 도서공간, 양호공간, 식당 등)이 어린이집 내에 두 군데 이상 마련되어 있음**	**2-1-3-①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의 별도의 공간(유희실, 도서공간, 양호공간, 식당 등)이 어린이집 내에 두 군데 이상 마련되어 있음**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관찰** ● 보육실 외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별도의 공간이 어린이집 내에 두 군데 이상 마련되어 있으며, 다음의 설비 및 비품들이 비치되어 있음. -------- (중 략) -------- - 아픈 영유아가 누워서 쉴 수 있는 양호공간이 어린이집 내(원장실 등)에 마련되어 있고, 비상약품, 간이침대(매트) 등이 비치되어 있음. -------- (중 략) -------- **〈신설〉**	**관찰** ● 보육실 외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별도의 공간이 어린이집 내에 두 군데 이상 마련되어 있으며, 다음의 설비 및 비품들이 비치되어 있음. -------- (중 략) -------- - 아픈 영유아가 누워서 쉴 수 있는 양호공간이 어린이집 내(원장실 등)에 마련되어 있고, 공간 내 비상약품, 간이침대(매트) 등이 비치되어 있음. -------- (중 략) -------- **궁금해요** Q. 어린이집 공간이 협소하여 미인가 공간이나 지하공간을 유희실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어린이집 평가에서는 어린이집으로 인가받은 공간을 대상으로 평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미인가 공간에 마련한 유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30일부터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에 있는 층)은 영유아의 보육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지하공간에 설치된 유희실 등의 영유아 활동공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세부 사례 보완
	〈변경〉 **2-1-3-② 보육실 내 영유아의 휴식공간이 있음** **관찰** -------- (중 략) -------- ● 휴식공간은 놀이공간과 구별되는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음. - 휴식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언어영역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음.	**2-1-3-② 보육실 내 영유아의 휴식공간이 있음** **관찰** -------- (중 략) -------- ● 휴식공간은 놀이공간과 구별되는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음. - 휴식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조용한 영역(언어영역 등)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음.	내용 보완
	2-1-4-①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체계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명칭, 내용, 관련 영역 등을 표시하여 보관하고 있음 -------- (중 략) --------	**2-1-4-①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체계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명칭, 내용, 관련 영역 등을 표시하여 보관하고 있음** -------- (중 략) --------	세부 사례 보완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h>비고</th></tr>
<tr><td rowspan="3">영역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td><td>〈신설〉</td><td>궁금해요
Q. 빈 보육실을 자료실로 사용해도 되나요?
A. 자료실은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 영유아의 보육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기타 유휴공간에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 시 면적 상 기존 정원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보육실을 자료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변경된 시설현황(보육실 수 등)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면적 및 정원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td><td></td></tr>
<tr><td>〈변경〉
2-2-2-③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바깥놀이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
관찰
● 영유아가 햇빛, 바람, 나무, 꽃, 흙, 모래, 물 등과 같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실외환경이 작은 면적이라도 마련되어 있음.
- 모래놀이터, 물놀이 공간, 동물 관찰 영역, 자연체험 영역(텃밭, 화단) 등
면담
● (교사) 영유아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실외환경으로 무엇을 마련하였는가?</td><td>2-2-2-③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바깥놀이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
관찰
● 영유아가 햇빛, 바람, 나무, 꽃, 흙, 모래, 물 등과 같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실외환경이 작은 면적이라도 마련되어 있음.
- 모래놀이터, 물놀이 공간, 동물 관찰 영역, 텃밭, 화단 등
면담
● (교사) 영유아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실외환경으로 무엇을 마련하였는가? 영유아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였는가?</td><td>내용
보완</td></tr>
<tr><td>〈변경〉
2-3-1-① 모든 반이 반편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중 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table><tr><th>반</th><th>만0세</th><th>만1세</th><th>만2세</th><th>만3세</th><th>만4세 이상</th><th>장애 영유아</th></tr><tr><td>교사 대 영유아 비율</td><td>1:3</td><td>1:5</td><td>1:7</td><td>1:15</td><td>1:20</td><td>1:3</td></tr></table></td><td>2-3-1-① 모든 반이 반편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중 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 기본보육반
<table><tr><th>반</th><th>만0세</th><th>만1세</th><th>만2세</th><th>만3세</th><th>만4세 이상</th><th>장애 영유아</th></tr><tr><td>교사 대 영유아 비율</td><td>1:3</td><td>1:5</td><td>1:7</td><td>1:15</td><td>1:20</td><td>1:3</td></tr></table></td><td>내용
보완</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h>비고</th></tr>
<tr><td rowspan="4">영역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td><td></td><td>• 연장보육반
<table><tr><th>반</th><th>만3세 미만</th><th>만3세 이상</th><th>만1세 미만
및 장애아</th></tr><tr><td>교사 대
영유아
비율</td><td>1:5</td><td>1:15</td><td>1:3</td></tr></table></td><td></td></tr>
<tr><td>2-3-1-② 연령별 반 규모는 만0세의 경우 3배, 만1세 이상의 경우 2배를 초과하지 않음
관찰 기록
● 여러 반의 영유아가 한 보육실에서 보육되는 경우, 함께 생활하는 영유아의 수는 제시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 영유아의 수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혼합연령반의 경우에는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함.
〈신설〉</td><td>2-3-1-② 연령별 반 규모는 만0세의 경우 3배, 만1세 이상의 경우 2배를 초과하지 않음
관찰 기록
● 여러 반의 영유아가 한 보육실에서 보육되는 경우, 함께 생활하는 영유아의 수는 제시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 영유아의 수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혼합연령반의 경우에는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함.
※ 운영안내서, 홈페이지 등에 어린이집 방침으로 정해진 반별 정원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반별 정원을 기준으로 평정함.</td><td>내용
보완</td></tr>
<tr><td>〈변경〉
2-3-2-① 수요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방법 등의 운영계획을 수립함
기록
-------(중 략)-------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함.
- 부모가 등·하원시간 변경을 희망하거나 신규 입소 원아가 있는 경우 해당 원아에 대해 수요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함.</td><td>2-3-2-① 수요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방법 등의 운영계획을 수립함
기록
-------(중 략)-------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함.
- 부모가 희망 등·하원시간 변경을 희망하거나 신규 입소 원아가 있는 경우 해당 원아에 대해 수요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함.</td><td>내용
보완</td></tr>
<tr><td>〈변경〉
2-3-2-②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부모에게 안내됨
기록
-------(중 략)-------</td><td>2-3-2-②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부모에게 안내됨
기록
-------(중 략)-------</td><td>내용
보완</td></tr>
</table>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 운영계획에는 어린이집 운영시간, 시간대별 교사 배치, 보육프로그램, 차량 운행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운영계획에는 어린이집 운영시간, 시간대별 교사 배치, 보육프로그램, 차량 운행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음.	
	〈변경〉 **2-3-2-③ 17시 이후 보육되는 영유아에 대해 자유놀이 등이 운영되고 있음** **기록** ● 17시 이후 보육되는 종일반 영유아를 위한 담당 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자유놀이 등이 이루어짐.	**2-3-2-③ 16시 이후 보육되는 영유아에 대해 놀이 및 휴식 등이 운영되고 있음** **기록** ● 16시 이후 보육되는 영유아를 위한 담당 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놀이 및 휴식 등이 이루어짐.	기준 변경
	2-3-4-② 신입 영유아의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기록** ● 신입 영유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자료(어린이집의 보육철학, 운영안내 등)가 마련되어 있고,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중 략)-------- - 방법 : 집단 또는 개별 오리엔테이션 실시 **〈신설〉**	**2-3-4-② 신입 영유아의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기록** ● 신입 영유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자료(어린이집의 보육철학, 운영안내 등)가 마련되어 있고,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중 략)-------- - 방법 : 집단 또는 개별 오리엔테이션 실시 ※ 감염병 발생 등으로 집단모임이 어려운 경우, 안내자료 배부 등으로 대체 가능함.	내용 보완
	2-4-2-① 평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가정과 소통하고 있음 --------(중 략)-------- **〈신설〉**	**2-4-2-① 평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가정과 소통하고 있음** --------(중 략)-------- **궁금해요** Q. 알림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알림장을 사용할 경우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A. 알림장은 가정과의 의사소통 방법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가정과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알림장을 사용하는 경우, 작성 빈도 및 사진첨부 여부는 평정내용이 아니며 활용여부만을 확인합니다.	세부 사례 보완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h>비고</th></tr>
<tr><td rowspan="2">영역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td><td>2-4-2-②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 개별면담하고 주요 면담 내용을 기록, 관리함

기록
●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 (학기 당 1회 이상)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
- 개별면담 실시 일시, 대상 및 면담자, 면담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음.
※ 부모 개별면담 진행 당시 재원 영유아를 기준으로 평정함</td><td>2-4-2-②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 개별면담하고 주요 면담 내용을 기록, 관리함

기록
●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 (학기 당 1회 이상)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
- 개별면담 실시 일시, 대상 및 면담자, 면담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음.
〈삭제〉</td><td>기준
변경</td></tr>
<tr><td>〈변경〉
2-4-3-①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을 월 1회 이상(영아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음

-------(중 략)-------

〈신설〉</td><td>2-4-3-①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을 월 1회 이상(영아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음

-------(중 략)-------

궁금해요
Q.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으로 동네 산책하기만 진행해도 되나요?
A. 영유아는 자신이 속해 있는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아 나갑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에게 지역사회의 주요 공간에서의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네 산책하기 등의 제한된 활동만 반복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td><td>내용
보완

세부
사례
보완</td></tr>
</table>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3. 건강·안전	**3-1-1-④ 실내의 공기 질,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정하게 유지함** **관찰** ------- (중 략) ------- ● 공기청정기를 구비하여 작동하고 있으며, 필터 등을 청결하게 관리함. ------- (중 략) ------- **〈신설〉**	**3-1-1-④ 실내의 공기 질,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정하게 유지함** **관찰** ------- (중 략) ------- ● 공기청정기를 구비하여 작동하고 있으며, 필터 등을 청결하게 관리함. ------- (중 략) ------- - 보육실에 창문이 없는 경우, 반드시 공기청정기를 작동하고 보육실 문을 자주 열어 환기함.	내용 보완
	〈변경〉 **3-1-3-②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놀잇감 및 활동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함** **관찰** ● 실내외 공간의 모든 놀잇감 및 활동자료, 보관함이나 바구니 등은 파손된 부분이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 ●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자전거, 탈것 등의 이동식 놀이기구는 파손된 부분이 없으며,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안전한 상태임.	**3-1-3-②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놀잇감 및 활동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함** **관찰** ● 실내외 공간의 모든 놀잇감 및 활동자료, 보관함이나 바구니 등은 파손된 부분이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 -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자전거, 탈것 등은 파손된 부분이 없으며,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안전한 상태임.	내용 보완
	3-2-1-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함 ------- (중 략) ------- **〈신설〉**	**3-2-1-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함** ------- (중 략) ------- **궁금해요** Q.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영유아가 등원합니다. 이때에도 매주 토요일에 대한 급·간식 식단을 모두 계획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한 급·간식 식단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영유아가 불규칙하게 등원하더라도 사전에 토요일 급·간식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제공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예: 어린이집 운영안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례 보완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h>비고</th></tr>
<tr><td rowspan="2">영역 3.
건강·
안전</td><td></td><td>궁금해요
Q. 계획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하려고 하나, 식자재 수급 사정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획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동일 식품군으로 대체 제공하면 인정 가능한가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적 균형을 고려하여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대로 급·간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자재 수급 사정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획과 다르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1개월 내 50% 미만) 불일치하는 경우는 감안하여 평정합니다.</td><td></td></tr>
<tr><td>3-2-1-④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함
------- (중 략) -------
〈신설〉</td><td>3-2-1-④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함
------- (중 략) -------
궁금해요
Q.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한 결과, 현재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없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없는 경우에도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나요?
A. 식품 알레르기는 대부분 출생 후 1-2년에 발병하며, 다양한 종류의 음식에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영유아의 경우 출생 후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으나, 어린이집에서 처음 접하는 식품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해당 지침을 마련하고 부모에게 이를 안내해야 합니다.
궁금해요
Q. 재원아 중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별로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하여 어린이집의 대처방법에 따라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를 고려한 급·간식의 조리, 배식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운영일지 등에 기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td><td>세부 사례 보완</td></tr>
</table>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3. 건강·안전	**3-2-2-②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음** 필수 ------- (중 략) ------- **〈신설〉**	**3-2-2-②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음** 필수 ------- (중 략) ------- **궁금해요** Q. 어린이집에서 된장이나 김치를 직접 담가 먹습니다. 직접 만든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은 어떻게 평정하나요? A.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의무적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본 평가요소에서는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린이집에서 직접 만든 식품(예 : 된장, 고추장, 김치 등)은 유통기한 평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궁금해요** Q.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에는 조리실이 없고, 같은 건물에 있는 유치원의 조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치원 조리실도 평정대상에 포함되나요? A.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승인이 있을 경우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이때 해당 조리실 내 모든 식자재(유치원용 등)가 평정대상에 포함되며, 조리실 공간 및 설비의 청결 여부도 함께 평정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가정어린이집에서 개인용도의 식자재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해당 식자재는 평정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부 사례 보완
	3-2-3-①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 (중 략) ------- **〈신설〉**	**3-2-3-①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 (중 략) ------- **궁금해요** Q. 미리 준비해둔 간식을 데우거나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을 때에도 반드시 앞치마와 머릿수건을 착용해야 하나요? A. 급·간식 조리 시에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일의 껍질을 깎는 전처리 작업과 음식을 데우는 등의 과정도 모두 조리과정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앞치마와 머릿수건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3. 건강·안전	**3-2-3-④ 마실 물, 우유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 (중 략) -------- **〈신설〉**	**3-2-3-④ 마실 물, 우유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 (중 략) -------- **궁금해요** Q. 마실 물을 반드시 보육실에 비치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원할 때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영유아의 활동공간에 마실 물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육실 안, 복도(보육실이 위치한 같은 층의 복도) 등 영유아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마실 물과 물 컵을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부 사례 보완
	3-3-1-① 교사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관찰** ● 교사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신설〉** -------- (중 략) -------- **〈신설〉**	**3-3-1-① 교사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관찰** ● 교사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 음식을 다루기 전, 바깥놀이 후, 변기 사용 후, 배변지도 후(기저귀 갈이 등) -------- (중 략) -------- **궁금해요** Q. 영유아의 콧물을 닦아준 후에도 매번 손을 씻어야 하나요? A. 교사가 영유아의 콧물 등을 닦아준 후에도 물로 손을 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보육실 상황에 따라 바로 손 씻기가 어려운 경우, 대안적인 방법으로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을 다루기 전 등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물로 손을 씻어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용 보완 세부 사례 보완
	3-3-1-② 영유아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관찰** ● 영유아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신설〉** ● 교사는 영유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손 씻기를 지원함.	**3-3-1-② 영유아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관찰** ● 영유아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 음식을 먹기 전, 바깥놀이 후, 대·소변 이후 ● 교사는 영유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손 씻기를 지원함.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3. 건강·안전	**〈신설〉**	- 유아의 경우 스스로 손 씻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관리함. - 영아의 경우 옆에서 지켜보며 손 씻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알려주고, 개별 영아의 발달수준에 맞게 도움을 제공함.	
	3-3-1-③ 식사 후 연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닦고 칫솔과 양치컵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관찰** -------- (중 략) -------- ● 교사는 영유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 닦기를 지원함. **〈신설〉**	**3-3-1-③ 식사 후 연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닦고 칫솔과 양치컵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관찰** -------- (중 략) -------- ● 교사는 영유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 닦기를 지원함. - 유아의 경우 유아가 이닦기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관리함. - 영아의 경우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되 일부 과정이라도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함	내용 보완
	3-3-2-①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침을 구비함 -------- (중 략) -------- **〈신설〉**	**3-3-2-①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침을 구비함** -------- (중 략) -------- **궁금해요** Q.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질병에 걸려 아프거나 사고로 다친 영유아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침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즉,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발생 시 처리 절차와 교직원의 역할을 문서화하여 항상 숙지하고, 상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의 참고문헌에는 어린이집에서 응급상황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침과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안전관리 백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 서울시 어린이집 안전수칙 매뉴얼(서울특별시, 2016) • 20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3. 건강·안전		**궁금해요** Q.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갑자기 열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나 문자로 부모의 동의를 얻고 해열제를 먹여도 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침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해열제 투약과 관련된 사항은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에 포함하여 보호자와 유선 연락 후 동의를 얻어 해열제 투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처치 후에는 알림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알림장), 대화수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약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3-3-2-③ 투약의뢰서를 관리하고, 부모에게 투약보고를 함 -------- (중 략) -------- **〈신설〉**	**3-3-2-③ 투약의뢰서를 관리하고, 부모에게 투약보고를 함** -------- (중 략) -------- **궁금해요** Q. 부모님이 영유아의 투약의뢰서를 기재하지 않고 투약 시간과 용량 등을 구두로 알려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아픈 영유아의 부모가 투약을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구두로 투약의뢰를 한 경우, 문자메시지 등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반드시 투약의뢰 필수기재사항(약의 종류, 용량, 시간, 의뢰자명)을 확인한 후 투약해야 합니다.	세부 사례 보완
	〈변경〉 **3-3-3-① 개별 영유아의 건강검진 서류,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관리함** **기록** ● 모든 영유아의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서류가 구비되어 있음. -------- (중 략) -------- ※ 영아(만0,1세, 만2세)의 경우, 신체계측 결과와 소아과의 정기 예방접종	**3-3-3-① 개별 영유아의 건강검진 서류,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관리함** **기록** ● 모든 영유아의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서류가 구비되어 있음. -------- (중 략) -------- ※ 영아의 경우, 신체계측 결과와 소아과의 정기 예방접종 등으로 갈음하여	내용 보완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h>비고</th></tr>
<tr><td rowspan="2">영역 3.
건강·
안전</td><td>등으로 갈음하여 비치할 수 있음.
〈신설〉

-------- (중 략) --------
〈신설〉</td><td>비치할 수 있음.
※ 만5세의 경우, 7차 영유아 건강검진까지 모두 실시하였다면 건강검진 실시 주기를 고려하여 평정에서 제외함.
-------- (중 략) --------
궁금해요
Q. 영유아 건강검진을 보호자에게 여러 차례 안내하였으나, 보호자가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에게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검진에 대해 3회 이상 고지·안내한 후에도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거부할 경우, 원장은 건강검진 고지 여부와 거부사유를 생활기록부 등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td><td>세부
사례
보완</td></tr>
<tr><td>〈변경〉
3-3-3-②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 교육을 실시함
-------- (중 략) --------
보육교직원
기록
●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이상 건강 또는 영양 관련 주제의 교육을 받은 기록이 있음.
- 대상 : 원장, 종일제 보육교사, 조리원
-------- (중 략) --------
- 방법 :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
〈신설〉</td><td>3-3-3-②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 교육을 실시함
-------- (중 략) --------
보육교직원
기록
●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이상 건강 또는 영양 관련 주제의 교육을 받은 기록이 있음.
- 대상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조리원
-------- (중 략) --------
- 방법 :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td><td>내용
보완</td></tr>
</table>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3. 건강·안전	**〈변경〉** **3-3-3-③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짐** **기록** ●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 서류가 구비되어 있음. - 대상 : 임용된 보육교직원, 미임용 보육교직원 중 매일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 어린이집 보육실습생,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파견 파견자 등 **〈신설〉**	**3-3-3-③ 보육교직원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짐** **기록** ●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 서류가 구비되어 있음. - 대상 : 임용된 보육교직원(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 미임용 보육교직원 중 매일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 어린이집 보육실습생,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파견 파견자 등 ※ 이때, 보육실습생,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파견자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내용 보완
	〈변경〉 **3-4-2-③ 통합보육 시 담당교사는 담당 영유아의 인원과 특이사항을 파악함** ------- (중 략) ------- **관찰** ● 통합보육 시 담당교사는 담임교사로부터 영유아를 인계받을 때 영유아의 정보(이름, 인계할 보호자)와 특이사항에 대해 전달받음.	**3-4-2-③ 통합보육 시 통합반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담당 영유아의 인원과 특이사항을 파악함** ------- (중 략) ------- **관찰** ● 통합보육 시 통합반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담임교사로부터 영유아를 인계받을 때 영유아의 정보(이름, 인계할 보호자)와 특이사항에 대해 전달받음.	내용 보완
	〈변경〉 **3-4-3-① 차량에 안전수칙, 영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 차량용 소화기,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비상약품을 구비함** **관찰** ------- (중 략) ------- ●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 (중 략) -------	**3-4-3-① 차량에 안전수칙, 영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 차량용 소화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비상약품을 구비함** **관찰** ------- (중 략) -------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 (중 략) -------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3. 건강·안전	**면담** ● (공통/운전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사용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 (공통/운전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매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면담** ● (공통/운전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사용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 (공통/운전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매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변경〉 **3-4-3-③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음** **기록** -------- (중 략) -------- ●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에 대해 차량 등·하원 지도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음. **〈신설〉**	**3-4-3-③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음** **기록** -------- (중 략) -------- ●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이수하였으며, 이를 증빙하는 수료증이 있음. ※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사이버교통학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및 오프라인교육)에 한해 인정함.	기준 변경
	〈변경〉 **3-4-3-④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 필수 **관찰** -------- (중 략) -------- ● 차량에 동승한 성인(교사 등)과 모든 영유아가 개별 안전띠(또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차량이 출발함. **〈신설〉** -------- (중 략) -------- ● 차량에 동승한 성인(교사 등)은 마지막에 모든 영유아가 차에서 내렸는지 확인하고 하차함.	**3-4-3-④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 필수 **관찰** -------- (중 략) -------- ● 차량에 동승한 성인(교사 등)과 모든 영유아가 개별 안전띠(또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차량이 출발함. - 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 또는 0그룹, 0+그룹, I 그룹)을 충족하는 제품을 착용함. ※ 영아용 보호장구는 등받이에 고정하여 안전하게 장착함. -------- (중 략) -------- ● 운전자 및 차량에 동승한 성인(교사 등)은 마지막에 모든 영유아가 차에서 내렸는지 확인하고 하차함.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3. 건강·안전	**〈신설〉**	- 모든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 전 좌석을 확인한 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확인버튼을 누르고 하차함.	
	3-5-1-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중 략) -------- **〈신설〉**	**3-5-1-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중 략) -------- **궁금해요** Q. 영아반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A. 영아반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의 내용, 주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0,1세의 경우,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양육이나 기본생활 관련 활동 등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Q. 영아에게는 의도적인 대집단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의 경우에도 대집단 활동으로 실시하면 안 되나요? A.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 방법 등은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 발달 특성상 대집단 활동이나 교사 주도의 활동보다는 영아의 개별적 요구,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집단 또는 개별 활동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쌓기영역에 횡단보도를 구성한 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일과 중 영아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놀이, 동화, 이야기 나누기 등의 방법으로 보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 계획 시에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http://www.csia.or.kr)「연령별로 알아보는 영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정판」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3. 건강·안전		**궁금해요** Q.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교육 관련 지표는 어떻게 평정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기를 수 있도록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항목에서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의 내용(종류), 실시주기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3-5-1-② 영유아가 정기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함 -------- (중 략) -------- **〈신설〉**	**3-5-1-② 영유아가 정기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함** -------- (중 략) -------- **궁금해요** Q. 소방대피훈련을 할 때 반드시 어린이집 외부로 나가야 하나요? 영아들이 어려서 외부까지 나가기가 어려워요. A. 어린이집에서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여 교직원과 영유아의 대피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하므로, 영아의 경우에도 실제 비상상황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외부로 대피하는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궁금해요** Q. 소방대피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때 지진이나 폭설 등의 재난대비훈련을 소방대피훈련과 매월 번갈아가며 진행해도 인정되나요? A. 소방대피훈련은 실제 비상상황과 동일하게 반드시 어린이집 외부까지 대피해야 하며, 모든 반의 영유아가 월 1회 이상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때, 지진 등 재난대비훈련은 영유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훈련에 한하여 인정하며, 매월 번갈아가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례 보완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h>비고</th></tr>
<tr><td rowspan="2">영역 3.
건강·
안전</td><td>〈변경〉
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필수
기록
-------- (중 략) --------
●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받은 기록이 있음.
- 대상
• 안전교육 : 원장, 종일제 보육교사
•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원장, 기타 보육교직원 포함)
〈신설〉
-------- (중 략) --------
〈신설〉</td><td>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필수
기록
-------- (중 략) --------
●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받은 기록이 있음.
- 대상
• 안전교육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기타 보육교직원 포함)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
-------- (중 략) --------
궁금해요
Q.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이므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즉, 원장, 보육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조교사 포함) 이외에 조리원, 차량기사, 사무원 등 임용된 기타 보육교직원도 모두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또는 자체교육 등의 방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td><td>내용 보완

세부 사례 보완</td></tr>
<tr><td>3-5-2-② 비상시 보육교직원의 대처 방안과 업무분장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음
-------- (중 략) --------</td><td>3-5-2-② 비상시 보육교직원의 대처 방안과 업무분장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음
-------- (중 략) --------</td><td>세부 사례 보완</td></tr>
</table>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3. 건강·안전	〈신설〉	**궁금해요** Q. 업무분장표와 비상시 역할분담표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업무분장표는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업무를 적절하게 분담하여 문서화한 것입니다. 반면 비상시 역할분담표는 화재나 재난, 안전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역할을 구분해 둔 것입니다. **궁금해요** Q. 매월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실행기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비상시 대피요령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나요? A. 대피요령은 화재,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전반을 대비한 행동지침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방대피훈련은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한 것으로, 대피과정의 일부 사례일 뿐 대피요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상시 대피요령은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 비상시 대피요령은 보육사업안내 서식(부록) 참고 ※ 재난별 대피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참고	
	〈변경〉 **3-5-2-③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음** **기록** ● 보육교직원 중에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이수증(또는 자격증)이 있음.	**3-5-2-③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음** **기록** ● 보육교직원 중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으며, 이를 증빙하는 이수증(또는 자격증)이 있음.	내용 보완
	3-5-3-② 비상사태를 대비한 소화설비(소화기 등)를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 (중 략) -------- 〈신설〉	**3-5-3-② 비상사태를 대비한 소화설비(소화기 등)를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 (중 략) -------- **궁금해요** Q. 어린이집에 소화기 대신 투척용 소화기(간이소화용구)만 구비하여도 무방한가요?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A. 어린이집에서는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각 층마다 소화기를 구비해야 합니다. 흔히 어린이집에서 지칭하는 투척용 소화기는 '간이소화용구'이므로, 어린이집에서는 투척용 소화기가 아닌 분말소화기(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를 구비해야 합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에 의하면, 간이소화용구는 소화기 및 자동확산장치를 제외한 소화능력단위 1단위 이하의 소화용구로서 화재발생 초기단계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화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1회용으로 제작되는 보조 소화용구이므로, 반드시 분말소화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영역 3. 건강·안전	**3-5-3-③ 비상사태를 대비한 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등)를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 (중 략) -------- **〈신설〉**	**3-5-3-③ 비상사태를 대비한 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등)를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 (중 략) -------- **궁금해요** Q.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무엇인가요? A.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천장에 붙여 두면 연기 등 화재의 위험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입니다. 화재 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하여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어린이집 건물(1~3층)의 구획된 모든 각 실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장소는 보육실, 유희실, 조리실, 교사실(휴게공간 포함), 원장실, 사무실, 자료실, 현관, 베란다, 보일러실, 창고, 드레스룸, 복도, 계단 등으로, 반드시 천장(계단은 최상층 천장)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은 오동작의 우려를 고려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4. 교직원	**〈변경〉** **4-1-1-③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임** **기록** ● 평가 직전 월까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임 - 대상: 종일제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제외) • 예: 2019년 11월에 현장평가를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2017년 10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인 경우 인정함.	**4-1-1-③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임** **기록** ● 평가 월까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임 - 대상: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교사 겸직 원장 제외 • 예: 2020년 5월에 현장평가를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2018년 5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인 경우 인정함.	기준 변경
	4-1-3-③ 원장은 보육교직원과 사전에 계획된 일정대로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실시함 **기록** ● 6개월 이상 근속한 교사를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음. **〈신설〉**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신설〉** ------- (중 략) ------- **〈신설〉**	**4-1-3-③ 원장은 보육교직원과 사전에 계획된 일정대로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실시함** **기록** ● 6개월 이상 근속한 교사를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기록(교사명, 면담일시 등)이 있음. - 대상 :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 ※ 6개월 이상 근속한 교사의 경우, 계획된 정기면담 일정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개별면담 실시기록 확인 ------- (중 략) ------- **궁금해요** Q.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과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원장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교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면담을 계획하여 진행·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정기적인 개별면담이란 사전에 일정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필요시 수시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으나 이는 정기적 면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별면담을	내용 보완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통해 원장은 교직원의 전반적인 어린이집 근무상황, 보육과정 운영 시 느끼는 고충과 어려움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발전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6개월 이상 근속한 교사가 있는 경우 계획된 정기면담 일정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역 4. 교직원	**4-2-1-① 교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나, 교사의 휴식을 위한 공간 또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음** -------- (중 략) -------- **〈신설〉**	**4-2-1-① 교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나, 교사의 휴식을 위한 공간 또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음** -------- (중 략) -------- **궁금해요** Q. 어린이집에 교사실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 A. 교사를 배려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나 교사의 휴식을 위한 공간 또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사실은 영유아 활동공간과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며 업무 지원 설비가 구비되어 있고, 교직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평가 항목에서는 교사실, 교사 휴식공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설비 중 1가지를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궁금해요** Q. 어린이집 내 빈 보육실에 교사실이나 교사용 휴식공간을 마련해도 되나요? A. 교사실은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 영유아의 보육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기타 유휴공간에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 시 면적 상 기존 정원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보육실을 교사실(교사용 휴식공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변경된 시설현황(보육실 수 등)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면적 및 정원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4. 교직원		**궁금해요** Q. 어린이집 지하층에 교사실을 마련해도 되나요? A. 지하층은 지상층에 비해 환경이나 비상대비 등이 취약하므로 물품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교사실은 지상층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기존 인가시설에 설치가 허용된 지하층 종사자 관련 시설(교사실 등)의 경우 양방향대피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공간으로 인정됩니다.	
	〈변경〉 **4-2-3-① 보육교직원, 부모 및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는 성인용 화장실을 어린이집 내에 마련하고 있음** **관찰** ●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1가지를 충족하면 인정함. -------- (중 략) -------- ㉡ 성인용 화장실을 별도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영유아용 화장실 내 한 칸에 성인용 변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 어린이집 내 화장실이 1개인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의 경우, 평정에서 제외함.	**4-2-3-① 보육교직원, 부모 및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는 성인용 화장실을 어린이집 내에 마련하고 있음** **관찰** ●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1가지를 충족하면 인정함. -------- (중 략) -------- ㉡ 성인용 화장실을 별도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영유아용 화장실 내 한 칸에 성인용 변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 어린이집 내 화장실(변기)이 1개인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의 경우, 평정에서 제외함.	내용 보완
	〈변경〉 **4-3-1-① 모든 보육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보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등이 명시되어 있음** **기록** ● 모든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상호 날인함. - 대상: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기타 보육교직원 포함)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원장도 근로계약 체결 대상에 포함됨.	**4-3-1-① 모든 보육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보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등이 명시되어 있음** **기록** ● 모든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상호 날인함. - 대상: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연장 보육 전담교사, 기타 보육교직원 포함)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원장도 근로계약 체결 대상에 포함됨.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4. 교직원	● 근로계약서에는 개별 보육교직원의 보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신설〉**	● 근로계약서에는 개별 보육교직원의 보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 제공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54조).	
	〈변경〉 **4-3-1-③ 보수 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육교직원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 **기록** ● 보육교직원의 보수 관련 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이를 준수함. **〈신설〉** - 보수 관련 규정에는 임금, 경력,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임금의 경우,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되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이라도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최저임금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설명자료 참조.	**4-3-1-③ 보수 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육교직원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 **기록** ● 보육교직원의 보수 관련 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이를 준수함. - 대상 : 고용된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 보수 관련 규정에는 임금, 경력,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사업안내에 규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교직원 임금을 지급하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원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임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이때 반드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함.	내용 보완
	〈변경〉 **4-4-1-① 보육교직원의 경력과 요구를 고려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기록** ● 연간 교육 계획이 보육교직원의 경력, 직무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내용으로 수립되어 있음. ※ 원장, 보육교직원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직무교육과 기타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이 모두 반영되어 있음. **〈신설〉**	**4-4-1-① 보육교직원의 경력과 요구를 고려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기록** ● 연간 교육 계획이 보육교직원의 경력, 직무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내용으로 수립되어 있음. **〈삭제〉** ● 직무교육과 기타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이 연간 교육 계획에 모두 반영되어 있음. - 대상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사는 평정에서 제외	내용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4. 교직원	**〈변경〉** **4-4-1-②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기록** ● 원장과 교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였음. **〈신설〉** ------- (중 략) ------- ● 원장과 모든 교사가 직무교육 외의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하였음. - 대상: 원장, 종일제 보육교사 - 내용: 영유아 발달, 보육과정, 상호작용 등에 관한 교육 - 방법: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교육(학회, 워크숍,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등), 온라인 교육 등 **〈신설〉** ※ 현장평가월 기준 3개월 이내 실시 기록 확인 **면담** ------- (중 략) ------- ● (공통) 가장 최근에 참석한 교육은 언제이며, 어떤 내용이었는가? **〈신설〉**	**4-4-1-②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기록** ● 원장과 교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였음. -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 (중 략) ------- ● 원장과 모든 교사가 직무교육 외의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하였음. - 대상: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 내용: 영유아 발달, 보육과정, 상호작용 등에 관한 교육 - 방법: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교육(학회, 워크숍,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등), 온라인 교육 등 ※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사는 평정에서 제외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 **면담** ------- (중 략) ------- ● (공통) 가장 최근에 참석한 교육은 언제이며, 어떤 내용이었는가? **궁금해요** Q. 원장과 교사 직무교육의 정해진 기간은 언제인가요? 승급교육, 특별직무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이 일반직무교육으로 인정되나요? A. 원장과 교사의 직무교육은 정해진 기간 내 승급교육, 특별직무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 경과한 해인 2020년에	내용 보완 기준 변경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2020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수 완료하시면 됩니다(2020년 보육사업안내).	
영역 4. 교직원	**〈변경〉** **4-4-2-①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이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짐** **기록** ● 원장이나 외부전문가가 일과 및 놀이 중 보육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해 관찰한 후 지원한 기록이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있음. - 대상: 반을 맡고 있는 종일제 보육교사 **〈신설〉**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 -------- (중 략) -------- **면담** -------- (중 략) -------- ● (공통) 상호작용 관찰 후 지원은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이루어졌는가? **〈신설〉**	**4-4-2-①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이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짐** **기록** ● 원장이나 외부전문가가 일과 및 놀이 중 보육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해 관찰한 후 지원한 기록이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있음. - 대상: 담임교사 ※ 입사 3개월 미만인 교사는 평정에서 제외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 -------- (중 략) -------- **면담** -------- (중 략) -------- ● (공통) 상호작용 관찰 후 지원은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이루어졌는가? **궁금해요** Q. 한 반에 교사가 2명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반별로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 및 지원을 실시해도 되나요? A. 원장 또는 외부전문가는 해당 교사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후, 해당 교사와 함께 토의 및 지원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같은 반이라 하더라도 교사마다 관찰 상황 및 지도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 내용을 개별적으로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찰 및 지원 관련 기록에는 필수기재사항(일시, 관찰자, 관찰내용, 평가 및 지원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용 보완 세부 사례 보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역 4. 교직원	**〈변경〉** **4-4-3-①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가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짐** **기록** ● 원장이 실시한 근무평가 기록이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있음. **〈신설〉**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 ※ 자기평가, 동료평가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근무평가로 인정되지 않음 ------- (중 략) ------- **면담** ------- (중 략) ------- ● (원장) 평가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평가 결과를 활용한 구체적 사례가 있는가? **〈신설〉**	**4-4-3-①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가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짐** **기록** ● 원장이 연 1회 이상 교사별로 근무평가를 실시한 기록이 있음. - 대상 :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 1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 한해 평정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 ※ 자기평가, 동료평가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근무평가로 인정되지 않음 ------- (중 략) ------- **면담** ------- (중 략) ------- ● (원장) 평가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평가 결과를 활용한 구체적 사례가 있는가? **궁금해요** Q.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를 자기평가나 동료평가로 실시해도 되나요? A.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는 교사 자신이 실행한 업무의 수준과 앞으로의 시행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자료가 되므로, 원장에 의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을 함께 진행할 수는 있으나, 해당 평가항목에서는 원장이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근무평가를 실시했는지 확인합니다.	내용 보완 세부 사례 보완